

●국토교통부령 제1291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12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광역급행형 시내버스운송사업은 기점 행정구역의 경계로부터 50킬로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대도시권역 내 둘 이상의 시·도를 운행하는 사업으로 한다. 이 경우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고속국도 또는 도시고속도로를 이용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행정구역에 진입하였다가 별도의 정류소에 정차하지 않고 다시 기점 행정구역에 돌아오는 것으로 인정하는 운행경로의 경우에는 기점 행정구역을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제8조제3항(중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로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점 행정구역의 경계로부터 50킬로미터를 초과하여 해당 사업의 노선을 정할 수 있다.

제8조제4항(중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이 항 제3호에 따라 행정구역을 벗어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관할관청이 고속국도 또는 도시고속도로를 이용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행정구역에 진입하였다가 별도의 정류소에 정차하지 않고 다시 기점 행정구역에 돌아오는 것으로 인정하는 운행경로의 경우에는 기점 행정구역을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제8조제4항(중전의 제3항) 제3호나목 중 “제2항 각 호” 를 “제3항 각 호” 로 한다.

제33조제8항을 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법 제10조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란 “5일” 을 말한다.
제40조의3제1항 중 “부피가 4만 세제곱센티미터 미만이거나 총중량이 20킬로그램” 을 “가로·세로·높이 세 변을 합하여 160센티미터 이하이거나 총중량이 30킬로그

램” 으로 한다.

제53조제1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55조제2항 중 “2장” 을 “1장” 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버스, 택시) 운전자
자격증” 을 “(버스, 택시) 운전자격증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
모바일 운전자격증” 으로 한다.

제55조의2제1항 중 “2장” 을 “1장” 으로 한다.

제56조제2항제2호 중 “2장” 을 “1장” 으로 한다.

제103조의2제1항 중 “9년” 을 “11년” 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11년” 을 “1
3년” 으로 한다.

제104조제2항 단서 중 “허가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를 “허가기간이 만료되기 60
일 전부터 10일 전까지의 기간에” 로 한다.

별표 1 제1호가목 중 “제8조제5항제1호” 를 “제8조제6항제1호” 로 하고, 같은 호 나
목 중 “제8조제5항제4호” 를 “제8조제6항제4호” 로 하며, 같은 표 제2호가목부터 다
목까지 중 “제8조제7항제1호” 를 각각 “제8조제8항제1호” 로 하고, 같은 호 라목부
터 바목까지 중 “제8조제7항제2호” 를 각각 “제8조제8항제2호” 로 하며, 같은 호 사
목 및 아목 중 “제8조제7항제3호” 를 각각 “제8조제8항제3호” 로 한다.

별표 3 제2호 비고 제3호 본문 중 “행정구역(특별시·광역시·시·군을 말하며, 이 별
표에서 같다) 안” 을 “행정구역(특별시·광역시·시·군을 말하며, 이 별표에서 같다)
또는 해당 행정구역과 맞닿은 행정구역 안” 으로 하고, 같은 호 단서를 삭제한다.

별지 제15호서식 앞쪽 처리기간란의 “즉시” 를 “5일 이내” 로 한다.

별지 제27호서식 앞쪽의 (버스운전, 택시운전) 자격시험 응시원서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버스운전, 택시운전) 자격시험 응시원서

① 성 명	(한글) (한자)	생년월일		성별		반명함판 사진 (3cm×4cm)
② 주 소						
③ 연 락 처	(전화번호)	(휴대전화)				
④ 운전면허증	(번호)	(종류)				
⑤ 확인사항 및 첨부서류	○ 확인사항 1. 운전면허증 2. 운전경력증명서					

- 첨부서류(택시운전자격시험 응시자 중 시험과목 일부를 면제 받으려는 자에 한정하며 해당란에 체크)
 1. 다른 지역 택시 종사자()
 2. 사업용 무사고증명관련 서류()
 3. 도로교통법 제146조 관련 서류()

*⑥ 수험번호

*⑦ 시험장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3조에 따라 운전자격시험에 응시하기 위하여 원서를 제출하며, 만일 시험에 합격 후 거짓으로 기재한 사실이 판명되는 경우에는 합격취소처분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응시자

(서명 또는 인)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귀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에 대한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별지 제28호서식의 서명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서식의 첨부서류란 제2호가목 및 나목의 “2장”을 각각 “1장”으로 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5조 및 제56조 에 따라 운전자격증 발급, 정정 또는 재발급
 제55조의2 운전자격증명 발급
 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또는 일반택시·개인택시 운송사업조합의 귀하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화물의 부피 및 무게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소화물을 운송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사업계획의 변경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접수된 사업계획의 변경신고에 대해서는 제33조제8항 및 별지 제15호서식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유상운송용 자가용자동차의 차령 연장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제103조의2에 따른 차령이 10년 6개월 이상인 자동차로서 차령 기간이 31일 이내로 남은 유상운송용 자가용자동차는 이 규칙 시행 이후 「자동차관리법」 제43조 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이하 “정기검사”라 한다)를 같은 법에 따른 검사기간 내에 받은 경우에는 이 규칙 제103조의2제3항에 따른 차령연장을 위한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정기검사를 받아 차령이 연장되기 전까지는 해당 자동차를 종전의 규정에 따라 연장된 차령 기간을 넘겨서 유상운송용으로 제공할 수 없다.

제5조(특정 유상운송용 자가용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동차로서 이 규칙 시행 전에 받은 정기검사 중 가장 최근에 받은 검사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유상운송용 자가용자동차는 해당 검사유효기간의 만료일까지 제103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차령이 추가로 부여된 것으로 본다.

1. 종전의 제103조의2에 따른 차령이 10년 6개월 이상인 자동차
2. 2023년 7월 3일 이후부터 이 규칙 시행 전까지의 기간에 종전의 제103조의2에 따른 차령이 만료된 자동차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동차 중 가장 최근 받은 정기검사의 검사 유효기간이 만료된 자동차는 이 규칙 시행 이후 받는 정기검사의 검사유효기간만큼 제103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차령이 새로 부여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기검사를 받아 차령이 추가로 부여되기 전까지는 해당 자동차를 종전의 규정에 따라 연장된 차령 기간을 넘겨서 유상운송용으로 제공할 수 없으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차령이 추가로 부여되는 경우에도 제103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최대 차령을 넘겨 해당 자동차를 유상운송용으로 제공할 수 없다.

◇개정이유

광역급행형 및 직행좌석형 시내버스운송사업의 노선구역에 대한 제한 및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운송할 수 있는 소화물(小貨物)의 규격 제한을 완화하고, 유치원·어린이집 등의 통학을 위한 유상운송용 자가용자동차의 차령을 최대 13년까지 연장하며, 전세버스운송사업자의 차고지 등록 기준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광역급행형 및 직행좌석형 시내버스운송사업의 노선구역에 대한 제한 완화(안 제8조제2항 및 제4항 후단 신설)

광역급행형 및 직행좌석형 시내버스운송사업의 운행경로를 정함에 있어 고속국도 등을 이용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행정구역에 진입하였다가 별도의 정류소에 정차하지 않고 다시 기점 행정구역에

돌아오는 경우에는 기점 행정구역을 벗어난 것으로 보지 않음으로써 광역급행형 및 직행좌석형 시내버스운송사업의 노선구역에 대한 제한을 완화함.

나.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에 대한 소화물 규격 제한 완화(안 제40조의3제1항)

종전에는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운송할 수 있는 소화물의 규격 제한을 부피가 4만 세제곱미터 미만이거나 총중량이 20킬로그램 미만으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가로·세로·높이 세 변을 합하여 160센티미터 이하이거나 총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으로 완화함으로써 시외버스를 활용한 소화물 운송의 범위를 확대함.

다. 유상운송용 자가용자동차의 차령 연장(안 제103조의2제1항 및 제4항)

13세 미만 어린이의 통학 등을 위한 유상운송용 자가용자동차의 허가 요건을 합리화하고 유치원 및 어린이집 등의 차량 확보·교체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유상운송용 자가용자동차의 차령을 9년에서 11년으로 완화하고, 정기검사를 통해 차령을 연장할 경우 해당 자동차를 최대 13년까지 유상운송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함.

라. 전세버스의 차고지 등록기준 완화(안 별표 3 제2호 비고)

종전에는 전세버스운송사업자가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행정구역 안에만 차고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전세버스운송사업자의 차고지 확보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앞으로는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행정구역과 맞닿은 행정구역 안에도 차고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국토교통부 제공>